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서울교육대학교-서초구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는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및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초구 간 긴밀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 서초구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원칙)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초구는 협력내용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신의를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력내용)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초구는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1. 4차산업혁명 기반 인공지능 기술 보급과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교육·행사 및 문화·체육 등에 관한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초구 간 시설 및 공간 상호 개방
3.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초구 캠퍼스타운 등 주요 협력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
4. 기타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4조(협의체 구성)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서울교육대학교·서초구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협의체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거나, 추가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조정한다.

제6조(비밀유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양 기관 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7조(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임채성

임채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장 전성수

전성수